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980

발의연월일: 2022. 12. 16.

발 의 자:최춘식·김학용·박성민

구자근 · 성일종 · 하영제

장동혁 · 김희곤 · 배준영

양금희 • 신원식 • 김성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 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.

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,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,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.

또한,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, 이에 따른 위해식 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,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,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,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(안 제42조의8,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)

법률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의3제6항 중 "국회"를 "기본계획은 국회"로 한다.

제42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
- 2. 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
- 3.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제 2항에 따른 산지관리전문기관
- 4. 그 밖에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,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

- 3. 산림청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4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원센터는"을 "산림청장은"으로, "수행한다"를 "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2조의12(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)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 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(이하 "공급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자생식물 종자(제2조제8호에 따른 "산림용 종자"를 말한다)의 수 집·증식·저장 및 생산
 - 2.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및 품질표시
 - 3.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 · 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운영 · 관리
 - 4.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
 - 5.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 · 공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

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력관리 및 품질표시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과 제3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.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
- 3. 산림청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42조의13(자생식물 종자 대행생산 등)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생산업자에게 대행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.
 - 1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
 -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 한해

- ·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 등은 제17 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2조의14(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) ① 산림청장은 고품질의 자생식물 생산·공급을 위하여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42조의12제1항과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·절차·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2조의15(자생식물 종자의 품질표시) 제42조의14제2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아 유통하려는 자는 제42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.
- 제42조의16(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 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대상, 운영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8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 - 8.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
- 9. 제42조의12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77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8. 제42조의14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ㆍ판매한 자
 - 9. 제42조의15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로 생산
 - 판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42조의3(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제42조의3(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⑤ (생 략) 수립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--- 기본계획은 국회 ----제출하여야 한다. (7) ~ (10) (생 략) (7) ~ (10) (현행과 같음) 제42조의8(산림복원지의 사후 모 제42조의8(산림복원지의 사후 모 니터링) ① (생 략) 니터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 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수목원・정원의 조성 및 1. 「수목원・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| 제18조의 | 진흥에 관한 법률 | 제18조의 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 리원 2. 「산지관리법」 제46조에 따 2. 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2제 른 한국산지보전협회 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<신 설> 3.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

<신 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- 23조제2항에 따른 산지관리전 문기관
- 4. 그 밖에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 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 는 기관 또는 단체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오
- 2.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,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
- 3. 산림청장이 운영실적을 평가

 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

 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

 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 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지정 등) ① (생 략)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│ ② 산림청장은 -----무를 수행한다.
 - 1. ~ 6. (생략)
 - ③ (생략)
 -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 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.
 - ⑤ ⑥ (생 략)

<u><신</u>설>

- 제42조의11(산림복원지원센터의 제42조의11(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 - ---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 다.
 - 1. ~ 6. (현행과 같음)
 -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- ④·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- 제42조의12(자생식물 종자 공급센 터 지정 등) ① 산림청장은 제4 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 식물 종자 공급센터(이하 "공급 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 다.
 -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자생식물 종자(제2조제8호에 따른 "산림용 종자"를 말한다)

- 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
- 2.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및 품질표시
- 3.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·공급 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운영· 관리
- 4.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
- 5.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 산·공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력관리 및 품질표시의 기준, 방법 및 절 차 등과 제3호에 따른 지역협의 체의 구성과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 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센터의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<신 설>

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
- 2.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,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
- 3. 산림청장이 운영실적을 평가 한 결과 공급센터로 계속 유 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 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

제42조의13(자생식물 종자 대행생 산 등)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생 산업자에게 대행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.

- 1. 「수목원・정원의 조성 및

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

 호에 따른 수목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
-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 생식물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 한해·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 등은 제17조제2항 규정을 준용 한다.

제42조의14(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인증) ① 산림청장은 고품질의 자생식물 생산·공급을 위하여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에 대 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42조의12제1항과 제42조 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 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 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·절차·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15(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표시) 제42조의14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아 유통하려는 자 는 제42조의12제3항에 따른 품 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한 다.

제42조의16(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 제68조(청문) 산림청장, 지방자치 저 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<u><신</u> 설>

<신 설>

제7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77조(벌칙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7. (생략)

으로 관리하	기 위하여 산림복원
정보체계를	구축 • 운영하여야
한다.	

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정보 체계의 구축대상, 운영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

세68조(청문)	
	<u>.</u>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모니 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 는 경우
- 8.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 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- 9. 제42조의12제5항에 따라 공 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8. 제42조의14제2항에 따라 품
	질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·판
	<u>매한 자</u>
<u><신 설></u>	9. 제42조의15에 따라 품질표시
	를 하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
	로 생산・판매한 자
8. (생략)	<u>10</u> . (현행 제8호와 같음)